D R & A J 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2. 5 Vol. 32



P&B Policy & Business Report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06 1. 구성
08 2. 소관법률

Ⅱ.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17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4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 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28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보건복지위원회

32 1) 간호법안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0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43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2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5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73 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75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8 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Ⅴ. 본회의

80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82 별첨 **1.용어해설**
2.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기획재정위원회

1. 구성
2. 소관법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정수 26 | 현원 25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9 | 비교섭단체 2



위원장
윤 후 덕

선 거 구 경기 파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 영 진
경기 수원시병
재선(20대, 21대)



위원
고용진
서울 노원구갑
재선(20대, 21대)



위원
김두관
경남 양산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김수흥
전북 익산시갑
초선(21대)



위원
김주영
경기 김포시갑
초선(21대)



위원
김태년
경기 성남시수정구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위원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21대)



위원
양경숙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우원식
서울 노원구을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이인영
서울 구로구갑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전해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정성호
경기 양주시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정일영
인천 연수구을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대구 동구갑
재선(19대, 21대)



위원
박 진
서울 강남구을
4선(16대, 17대, 18대, 21대)



위원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초선(21대)



위원
서병수
부산 부산진구갑
5선(16대, 17대, 18대, 19대, 21대)



위원
서일준
경남 거제시
초선(21대)



위원
정운천
비례대표
재선(20대, 21대)



위원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5선(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유경준
서울 강남구병
초선(21대)

정의당



간사
장혜영
비례대표
초선(21대)

기본소득당



위원
용혜인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정부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련기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률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경제·재정부문	1	경제교육지원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국가재정법
	9	국가채권관리법
	10	국가회계법
	11	국고금관리법
	12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3	국유재산법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6	국채법
	17	귀속재산처리법
	18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19	담배사업법
	20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2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3	물품관리법
	24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부담금관리기본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3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3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34	정부기업예산법
	35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7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38	통계법
	39	한국수출입은행법
	40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경제·재정부문	41	한국은행법
	42	한국재정정보원법
	43	한국조폐공사법
	44	한국투자공사법
	45	협동조합 기본법
	4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조세부문	1	개별소비세법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관세법
	4	관세사법
	5	교육세법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국세기본법
	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9	국세징수법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	농어촌특별세법
	1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13	법인세법
	14	부가가치세법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세무사법
	17	소득세법
	1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9	인지세법
	20	임시수입부가세법
	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2	자산재평가법
	23	조세범 처벌법
	24	조세범처벌 절차법
	25	조세특례제한법
	26	종합부동산세법
	27	주세법
	28	증권거래세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O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O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	한·중남미재단법안
국방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8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O	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0	심리사법안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O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528호



이 상 헌

선 거 구	울산 북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5.0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2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283호



이 동 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4.1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전문점 등 대규모점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계약당사자간 계약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

복합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분들이 그 대표적인 예임. 복합쇼핑몰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임대료, 할인판매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일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 점포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점주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 입점점주 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 신설 등).

3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534호



배 진 교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5.0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신설 등).

4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01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4.2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에 따른 2015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합병시점을 지배주주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고평가되고,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의 주가는 저평가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된 반면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5

정무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11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4.2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는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로 그 손해배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88호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5.0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민원의 신고수리 여부 등 통지기간(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1)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의 보완(현행 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과징금 부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분할 등에 따른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와 과징금의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 신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정 상태를 오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보고서를 공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19호



김 의 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4.2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나.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이용자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뉴스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등, 이용자 개인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

다. 이용자가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44조의10제2항제3호).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28호



김 종 민

선 거 구	충남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4.27. 제안

제안이유

국내 · 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 ·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 · 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의14)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안 제4조제2항의9)
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안 제44조제4항)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안 제44조의2제1항).
마.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안 제44조의2제3항).
바.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안 제44조의2제4항 및 6항).
사.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안 제44조의10).
아.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안 제44조의10제6항).
자.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안 제 44조의12).
차.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안 제 44조의13).
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6조제1항의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84호



안 병 길

선 거 구	부산 서구동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5.03.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와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의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19개 항만재개발사업에 약 6.8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 · 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주도의 항만운영 위주의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 ·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3	공소청법안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6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2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이장 ·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7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9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10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1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12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13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농림어업회의소법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회의소법안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8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O	1	간호법안
		2	간호 · 조산법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제입양법안
		15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48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환경노동위원회	O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O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0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O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1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O	2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139호



김 민 석

선 거 구	서울 영등포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5대, 16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3.25.	제안
상임위원회	2021.04.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11.24.	상정
	2022.02.10.	상정
	2022.04.27.	상정
	2022.05.09.	상정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 · 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 · 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 · 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참고자료

< 요양기관 종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 현황 >

2021.03.31 현재 (단위:명)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230,168	209,412
의료기관	상급종합	**61,457**	3,353
	종합병원	**77,149**	14,494
	병원	**35,047**	**23,517**
	요양병원	**27,029**	**31,863**
	정신병원	2,334	1,671
	의원	17,131	**87,444**
	치과병원	143	350
	치과의원	428	**19,087**
	조산원	0	10
	한방병원	2,970	**3,300**
	한의원	1,048	**21,404**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228	82
	보건소	2,656	1,086
	보건지소	689	1,741
	보건진료소	1,859	10

만성질환자 증가 (%, 천명)



다양화되는 간호사의 역할

▶ **(방문건강관리)** 취약 가구 대상자 발굴 • 등록,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계획 수립 • 시행

▶ **(가정간호)** 간호, 검체 채취 •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 훈련, 상담, 건강관리 의뢰 등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 관리계획 수립,상담 • 교육, 지속 관찰 등

【 보건의료환경 변화 】

○ **노인인구 증가**

-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7% 이상) →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이상)
  → **2025년 초고령 사회**(노인인구비율 20% 이상) 예상 → **2060년 노인인구비율 43.9% 예상**

○ **만성질환 증가**

- **고혈압 유병률** 2007년 24.5% → 2016년 29.1%**(4.6%증), 당뇨병 유병률** 2007년 9.5%
  → 2016년 11.3%**(1.8%증), 치매 등록환자** 2011년 155,894명
  → 2018년 378,798명**(222,904명, 143% 증)**

○ 노인진료비 급등

- **2005년 24.4%** → 2010년 32.4% → 2016년 38.7% → **2020년 45.6%** → **2030년 65.4%(예측)**

*출처: 국가통계포털,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 의료인 면허자, 간호조무사 자격자 수 >

(단위 : 명)

연도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014	112,407	22,007	28,123	8,382	323,041	601,941
2015	115,976	23,178	28,942	8,387	338,629	637,513
2016	118,696	23,845	29,632	8,328	355,772	660,125
2017	121,571	24,560	30,333	8,297	374,990	681,276
2018	123,106	24,861	30,910	8,266	394,662	729,264
2019	126,724	25,523	31,629	8,247	414,983	752,920
2020	129,242	26,096	32,335	8,220	436,340	788,247

자료 :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 간호조무사 수 >

(단위: 명, '21.1월 말 기준)

총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소계	간호사	가정 전문	보건 전문	마취 전문	정신 전문	
434,526	**225,770**	224,347	647	107	231	438	**208,756**

자료: 보건복지부,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신고 현황(심사평가원)

< 분야별 활동 간호사 수 >

활동분야	간호사 수	출처
의료기관	213,904명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기관	13,876명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2019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3,312명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 (초 • 중 • 고 • 특수 • 기타) 보건교사	8,200명	「학교/학과별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한국교육개발원
어린이집	494명	「2019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공무원 (국가직 • 지방직)	9,186명	「2019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2019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행정안전부

자료: 대한간호협회

< 주요국의 간호인력 별도 입법례 >

국가	법 명칭	제정년도
미국	간호사의 업무 및 면허 등과 관련해서 연방법률이 아닌 주법(州法)에서 규정 예: (캘리포니아주) 직업/전문가법전(Business and Professional Code) Division 2(치료기술) 제6장(간호) (Nursing)	
	간호사 재투자법Nurse Reinvestment Act	1944년
일본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1948년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1992년
영국	간호사, 조산사 법(Nursing and Midwifery Order 2001)	2001년
덴마크	간호사법(Nurses Act)	1956년
뉴질랜드	간호사법(Nurses Act)	1977년
독일	간호직업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rankenpflege)	1985년
캐나다	간호사법(Registered Nurses Act)	1988년
싱가포르	간호사, 조산사 법(Nurse & Midwives Act)	1999년

자료: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 재구성

<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2306 판결]

-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6. 7. 7.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의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되어 있고(제2조 제1항),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항),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음(제7조)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1. 12. 13. 선고 2010고정6026]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3.26.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의료법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진료행위 외에 진료보조행위를 구별하여,진료보조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제5호).그리고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

-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 함은, 그 문제된 행위 자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혹은 부작용, 그 부작용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 유무, 환자의 진료 당시의 신체 상태, 문제된 행위가 의사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교육기간의 장단 및 간호사의 정규 교육 혹은 실습과정에도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주요발언

<제39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종합해 보면 간호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간호법의 독립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직역 간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간호법 우선 적용의 문제입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이견 사항입니다. 간호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간의 지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면 간호조무사 1인 채용이 어려워지는 등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정안의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과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간호사를 대체하는 간호조무사 1인 채용 등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현행 지역보건법 등 개별 법률은 새로 제정되는 간호법의 특별법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간호조무사협회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간호사-간호조무사 지도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법화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방'을 추가하는 여부인데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업무입니다.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간의 이견 사항으로서 간호협회는 의사가 병동에 항상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작성된 처방전 등으로 간호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의사협회는 동 규정으로 인해서 간호사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진료가 가능해지고 나아가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입법적 발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현행 의사-간호사의 업무 지도 개념도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입니다. 이와 유사한 '처방'의 개념을 추가할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의 상반된 견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상·해석상 많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행 규정의 문제로 인해서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처벌 위험이 상존한다는 간호사협회의 문제 제기도 수긍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제정안에서 '처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현행 '업무상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 요인도 제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간호사-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 용어 문제입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이견 사항인데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영역에서 '보조'를 삭제하는 제정안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에서도 '보조'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은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 문제입니다.
간호협회와 요양보호사협회 간 이견 사항으로서 간호협회는 간호간병 통합 운영 추세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의료법상의 간병지원인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는 돌봄 영역의 종사자로 의료인력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내용의 삭제 부분은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간호협회장도 2차 소위에서 삭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협회 요구사항 네 가지 사항입니다.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사항, 간호조무사 전문대 2년 과정 신설에 관한 사항,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 당연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과정 신설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병합심사 사항인데, 간호인력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입법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는 3건의 간호법안의 입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안 축조심의 과정에서 참고하여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442호



양 정 숙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4.13.	제안
상임위원회	2021.06.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4.21.	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유출 ·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 2015년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실태점검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감독관청이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누출 · 변조 ·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위치정보를 오용 ·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위치정보가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참고자료

< 이해관계자 의견(한국인터넷기업협회) >

■ **(안 제16조 제3항) 점검 강제의 불필요**

○현행법상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술적 • 관리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통해 형식적 점검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만 야기할 것임

■ **(안 제35조의2) 실태조사의 추가는 중복규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등에 따라 관련 기업에 대한 물품 • 서류 등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등에 따라 기업에 법규 준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처럼 이미 다른 법률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서 실태조사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가까워 기업에 부담만 가중될 것임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370호



전 혜 숙

선 거 구	서울 광진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8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11.	제안
상임위원회	2021.02.0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4.21.	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글 · 페이스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해외에는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 간의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1호의2 · 제2호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주요발언

<제395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다음으로 전혜숙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자료 1번,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먼저 SK브로드밴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인터넷 이용자 관점에서는 대형CP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가 대형CP 구독자의 인터넷 요금을 대신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정안들은 국내CP와 해외CP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오히려 CP들 간 차별을 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반해서 넷플릭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최종 이용자에 대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이고 ISP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넷플릭스와 무정산 연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반대를 표하고 있는 등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국내외 통신환경과 규범, 이해관계자 현황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기를 희망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번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6개 글로벌 CP의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21%, 구 페이스북이 15.4%, 넷플릭스가 9.4% 등 총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 기업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27%, 네이버가 2.1%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하게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측이 제기한 한미 FTA 협정 제14장 통신 규정 중 일부 내용의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필모 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셨습니다마는 이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시정 문제라든지 또는 망 중립성 적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자유계약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제안을 드리고요. 물론 제정법안은 아닙니다만 워낙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봐서 공청회 이후에 재심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소위원장 김영식



혹시 다른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 윤영찬 위원



저도 정필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 거의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이게 논의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필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계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의무 규정을 법안으로 만들 경우에 거꾸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 오히려 이 조항들이 거꾸로 우리 기업들에게 역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이 계약 간에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얼마 간의 트래픽을 썼는지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들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도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요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ISP의 국제적인 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상에서 우리가 티어(Tier) 1 그룹을 갖지 못함으로써 해외의 일개 CP들이나 아니면 ISP들하고 피어링(Peering)을 못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결국은 CP나 아니면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한 논거인데 이런 얘기들이 빠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불러서 공청회를 반드시 한번은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472호



이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4.14.	제안
상임위원회	2021.06.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5.0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건설폐기물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업체 매출 규모 등은 약 2배 증가하는 등 처리업체 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을 1억원 이하로 유지하여 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또한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고, 대체과징금제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반복해서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의 부과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5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139호



박 대 출

선 거 구	경남 진주시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04.	제안
상임위원회	2021.02.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5.09.	상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정하면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50인 ~ 299인 사업장은 2020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계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을 시행해야 함.

그러나 중소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 보충 등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어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다수의 산업이나 업종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 ·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110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 및 제110조).

6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99호



임 이 자

선 거 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5.04.	제안
소위원회	2022.05.0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2.05.09.)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오프라인에서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 · 징수 체계와 급여 ·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와 함께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0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

1)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함.
2)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함.
3) 산재보험 적용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직종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1)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함.
2) 평균보수는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발생 사업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 및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3)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함.

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라.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1)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함.
2)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특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바. 부분 휴업급여 산정방식 개편
1) 언제라도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노무제공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함.
2) 새로운 부분 휴업급여 산정기준은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함.

사.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골프장캐디 등 일부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휴업등 신고제도" 도입

아.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단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2)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에게 본인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주요발언

<제39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임종성 의원님 안이 작년에 나왔고 의원님 안이 발의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서 임이자 의원님 안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임이자 의원님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도 장을 신설하되 어디에 두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제3장(보험급여) 다음에 보면 제3장의2, 제3장의3 하는 방식으로 특례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장의4로 가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전속성 요건 삭제, 노무제공 성격은 그대로고, 3번의 직종 선정 기준에 종사자 규모가 어떻게 보면은 보호의 필요성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사자가 굉장히 많은 직종은 우선적인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임종성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종사자의 규모가 적으면 보호 안 해도 된다는 취지냐 또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임이자 의원님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직종 선정은 저희들이 필요한 노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업계 논의, 노동조합과의 논의, 특고단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선정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무제공 방식에 따른 부분은 임종성 의원님 안은 온라인 플랫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임이자 의원님 안은 노무제공 방식을 두고서 사업주로부터 직접 하느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의원님 안이 일견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의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임의로 적용제외 신청하던 것을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개선이 되어 있고, 임종성 의원님 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안은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적용제외를 당장 폐지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 유예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전속성이 폐지된 마당에, 저희들이 실소득 내지 실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고 노무제공자들의 취업 상태, 소득활동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는 차제에 폐지하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소득 파악이 실소득 내지 실보수 파악이 힘든 직종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보험료 징수 납부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외의 직종은 저희들이 실보수 소득활동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를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이자 의원님 안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윤준병 의원님은 당시에 이게 굉장히 진전된 안이나,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가 있는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납부 유예된 것은 유예된 것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이자 의원님 안이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제일 종합해서 조금 진전된 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득기준 적용 제외 규정 이 부분은 고용보험은 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경우에는 실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는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산재보험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어떤 경우에도, 아주 짧은 기간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소득기준으로 적용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호 대상에는 포함하되 아주 소득이 낮은 경영계나 플랫폼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료 감면 근거 조항을 두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 제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에 대한, 소득은 낮은데 보험료는 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해소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요 조항을 넣는 임이자 의원님 안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 보수는 두 분 의원님 안이 똑같고, 그다음에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서 용어 수정하는 것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의 플랫폼 노동 정의 규정, 일괄에서 할 거냐 분산해서 할 거냐 하는데 일괄해서 하는 게 좀 더 보기에 낫다 하는 전문위원님 의견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공 의무를 제116조에 포함해서 일괄해서 할 거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례조항 신설할 경우에 신설 조항이 과태료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116조(사업주의 조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태료와 연계되지 않은 선언적인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냥 임종성 의원님 안대로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저희들이 근로자 기준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부분은 따로 정하고, 그다음에 휴업급여 최저기준 이 부분은 별도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 휴업급여는 휴업급여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휴업급여 산정 방식은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부칙은 통상적인 입법례는 공포 후 1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대국민 홍보 측면도 감안해 가지고 1월 1일 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은 7월 1일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미구에,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그냥 23년 7월 1일로 해 주시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거나 홍보하는 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례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공포 이후에 시행 전이라도 보조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미 보험료도 납부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규정을,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위원의 주요 쟁점사항이 제안하신…… 이게 임이자 의원님 안 부칙에 있는 조항인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 윤준병 위원



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와 정산과 관련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 두는 것 나는 이것은 원래 두고자 하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운영자들이 요새 큰손이 돼 가지고 온갖 법, 여러 가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오히려 이것을 차제에 잘 정리해서 운영이 제대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 줘야지, 나는 이것 전용계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의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 차제에 제도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임이자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 뭐 앙꼬 없는 찐빵이지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의견대로 하면 되지요.

■ 윤준병 위원



예.

■ 임이자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저것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 소위원장 안호영

그렇지요.

■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이것은 거의 뭐 별 저것은 없는 것 같아요.

■ 윤준병 위원



한 번 다 정리해서 뒤에 할 때 다시 한 번 리뷰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 임이자 위원



다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대령을 우리가 유지해서 가자,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유지해서 가 가지고 길은 터 놓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는 그것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앙꼬 없는 찐빵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하고……

■ 윤준병 위원



예, 나도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안호영



그러면 절차법, 징수법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쟁점으로 돼 있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방식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현재 시행령이 미제정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은 이렇게 좀 하자는 거지요?

■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7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226호



윤 미 향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8.25.	제안
상임위원회	2022.05.0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5.09.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최근 폭염 • 한파 •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노동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 • 한랭 •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상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환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업종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상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상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의2 신설, 안 제53조 등).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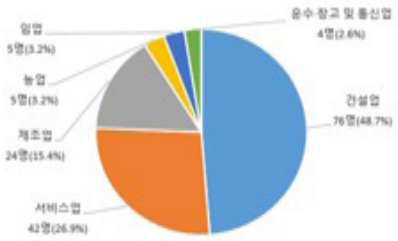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 한랭 · 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 한랭 ·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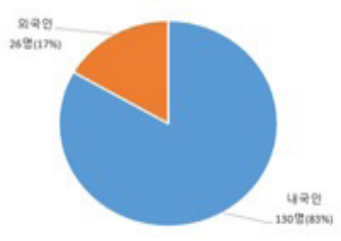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5년간(2016 ~ 2020년)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업종별 온열질환 산재현황



내외국인별 온열질환 산재현황

참고자료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 ·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 · 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 · 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 · 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 ·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 · 제빙고 · 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 · 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 · 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 ·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8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599호



윤 준 병

선 거 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20.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5.0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 • 노후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 누출되어 발생한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실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47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 22명, 부상 306명 등 총 3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피지도 제작 및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77개 지역 732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현행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선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인 만큼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23조의5 신설).

참고자료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현행법 주요 규정 >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 ·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 · 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리 관련 환경부의 추진 현황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 권고('21.3)**

○ 지역화 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시 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관리, 점검,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 지자체 배포(66개소 조례 제정)

※ 화관법 제7조의2(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

□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 관리 안내서 마련 및 배포('21.8)**

지정요건 검토 (취급시설 500m 이상 등)	▶ 사전협의 (소유자 • 관리자)	▶ 지정통보 (소유자 • 관리자)	▶ 장소관리 (NDMS입력, 표지판 설치 등)	▶ 홍보 • 훈련 • 보고 (안내지도, 훈련 등)

○ **(지정요건)** 취급시설 경계로부터 최소 500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화학물질 확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상(옥외공간 제외)으로 학교 강당, 체육관 등 선정

○ **(장소관리)** 대피장소명, 수용인원, 면적, 위치, 관리자, 연락처 등 현황 정보 현행화(국가재난관리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안내요원 지정

○ **(홍보 • 훈련)** 지역주민의 대피장소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해 안내지도 제작 등 대피장소 홍보 및 대피장소를 활용한 대피훈련 실시

○ **(표지판 설치)** KS 국가표준을 고려하여 표지판의 색상, 재질 등을 선정

심볼	안내표지판	방향표지판
		

주요발언

<제39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 임종성 위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피장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피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피소 지정이 잘 안 된 데는 규정상 미비점도 있지만 대피소 지정 기준이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는 충족시키기도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요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지정 기준만 세울 것이 아니라 설계할 때 아예 준공 당시에 대피소 지정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피소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줘야지만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사실은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그런데 장소가 없는데 뭘 관리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장소들을 설계시에 미리 확보하고 그렇게 해 놓고서…… 앞으로 화학전이나 이런 것들이 빈발하게 나타날 거고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부차관 홍정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대피소 지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작년에 대피장소 지정 등을 포함한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권고를 해서 8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피장소 지정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배포를 해서 현재는 131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개 지자체에서 지정이 됐는데 아직도 26개 지자체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시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지정을 해 나가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게 홍보도 좀 잘 돼야 되는 게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계할 때 모든 지자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좀 더 강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부차관 홍정기

예, 그러겠습니다.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3	공소청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3	과학 · 수학 · 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대학법안
		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2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4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3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항공우주청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2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어촌 · 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9	어촌 ·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4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5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6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O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
		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문신 · 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2	반영구화장사법안
		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31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3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4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장애여성지원법안
		5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6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6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6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7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7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에서의 학력 ·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3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4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50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5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6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65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6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6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7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7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8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8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통기본법안
		2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5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O	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주택 · 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6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74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331호



이 원 욱

선 거 구	경기 화성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5.24.	제안
상임위원회	2022.06.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7.29.	상정
	2021.11.2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2021.12.01.	상정
		축조심사
	2022.01.05.	상정
		축조심사
	2022.05.0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가결)
상임위원회	2022.05.0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수소경제는 변동성이 많은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음.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에서 수소경제에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제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 청정수소발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 · 생산 · 보급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 · 생산 ·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라.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 · 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청정수소의 생산업자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인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신설).

아.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 · 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자.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 고시하도록 하며,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차. 판매 · 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 · 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함(안 제25조의9 신설).

카.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4호의2 신설).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함(안 제59조제1항).

참고자료

< 수소 생산구성 및 공급목표(수소경제로드맵) >

구분	현재	2022년	2030년	2040년
구성	① 부생수소 ② 추출수소	① 부생수소 ② 추출수소 ③ 수전해	① 부생수소, ② 추출수소 **③ 수전해,** **④ 해외생산** ※ ①+③+④ : 50%, ②: 50%	① 부생수소, ② 추출수소 **③ 수전해,** **④ 해외생산** ※ ①+③+④ : 70%, ②: 30%
	-	수도권 인근 대규모 생산	해외 수소 활용	CO2 free 수소 대량 도입
공급	13만톤/年	47만톤/年	194만톤/年	526만톤/年

< 수소 관련 업계의 의견 >

구분	주요 의견
전력 공기업	• 법안 개정에 이의가 없으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특히 발전공기업들은 의무자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 • 청정수소 활용 확대라는 중장기 방향에 동의하나, 지나치게 빠르게 활용 비율을 높일 경우 부담이 될 우려
수소관련 기업체	• '21.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정수소 인증제를 조기도입하여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제시해주기를 희망함 • 법제화될 경우 청정수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생에너지 업계	• REC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간헐성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연료전지를 RPS에서 제외하는 등 대책 필요
연료전지 제작사	• 크게 환영하며,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적 시장 구축되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단가 절감에 박차를 가하겠음 • 청정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수전해 기술 개발 등에도 기여하겠음
민간 에너지업계 및 EPC 사업자	• 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제도가 조기에 구체화되기를 희망함
금융업계	• 안정적인 제도 마련시 Financing 비용을 저감하여 수소 발전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 • 제도설계시 금융권 의견 수렴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이원욱의원안	송갑석의원안
공통점	• 청정수소, 청정수소발전의 개념 정의(§2) •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①청정수소 개발 • 생산 • 보급 촉진, ②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포함(§5) •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 규정(이원욱의원안 §25의3, §25의4 / 송갑석의원안 §25의2, §25의3) • **수소충전소** 등에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판매 • 사용의무** 부과근거 마련 - 이행담보 위한 정부 보고의무 포함(이원욱의원안 §25의7, 송갑석의원안 §25의4) • **청정수소발전 구매 제도 도입**(이원욱의원안 §25의8, 송갑석의원안 §25의5) • 의무미이행시 과징금 부과(이원욱안 §25의9, 송갑석안 §25의6) • 청정수소 인증기관 임직원을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57) •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62)	
차이점	• 국가 • 지자체 책무로 청정수소 개발 • 생산 • 보급 추가(§3) • 정부에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 의무**(§25의2)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의무 규정 • 인증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명시(§25의5, §25의6) • 청정수소 생산자등에게 **생산량 • 구매자 보고+판매인증서 발급의무** 부과(§25의3) • 청정수소 판매증명서 발급 금지 또는 개선명령 처분 근거 명시(§25의4) • **청정수소발전 전기만 의무구매 상**(§25의8) •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만 구매의무**(§25의8) • 수소인증 관련 과태료 • 과징금 외 벌칙(§59) • 청정수소 허위표시 시 과태료(§62) • 시행일 : 공포 후 1년	• "수소발전사업자"의 정의 추가(§2) •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 재량** 부여(§25의2) • 청정수소 제조자에게 **생산량 • 구매자 산업부장관 통보의무** 부과(§25의2) • **청정수소 외 일반수소발전 전기도 의무구매 대상**(§25의5) • **전기사업자(한전/발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매의무**(§25의5) • 수소인증 관련 과태료, 과징금만 부과 • 청정수소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62)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법과 개정안 비교 >

구분	신재생에너지법	이원욱의원안	송갑석의원안
이행 기본 계획	• 신재생 기술개발, 이용 • 보급 지원방안(제5조제2항제7호)	• 청정수소 개발 · 생산 • 보급 촉진 •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수소경제 전환(제5조제2항)	<좌 동>
인증기관	• 공급인증기관 지정근거 • 신재생센터, 전력거래소, 기타 지정기준(시행령)에 맞는 자(이상 제12조의8)	•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의무 • 수소관련업무 수행 법인 • 단체(이상 제25조의 2)	•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근거** (제25조의2)
인증기관 지정절차	• 산업부에 신청 필요 • 세부절차 등 부령 위임(이상 제12조의 8)	• 산업부에 신청 필요(제25조의 2) ※ 세부절차 등 위임 없음	
인증기관 업무/ 의무 등	• (업무)구체적으로 나열 • (산업부 감독)자료제출요구, 시정명령 근거(제12조의9)	• (업무)인증(변경/조건부 포함) • (의무)인증기록 작성 • 보관, 인증받은 제조설비 정기검사 • (산업부 감독)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제25조의2)	
인증기관 지정취소	•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 세부기준 부령 위임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5천만원), 세부기준 대령 위임(제12조의 10)	•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 세부기준 부령 위임(제25조의 5)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3억원), 세부기준 대령 위임(제25조의 6)	
인증기관 취소사유	• 거짓/부정방법, 업무정지중 업무지속, 지정기준에 부적합, 시정명령 미이행(제12조의 10)	• <죄동> • (추가)정당한사유없이 미인증,인증절차/기준 위반, 인증기록 작성/보관의무 미이행(제25조의 6)	
인증	• 신재생e공급자는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가능(임의)(제12조의 7)	• 청정수소 생산업자등은 생산시설 등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변경인증을 받아야 함(강행)(제25조의 3)	• 산업부장관은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가능(제25조의 2)
인증기준	• 신재생연료 품질기준은 시행령 위임(제12조의 11), 품질검사 방법 등 부령에 위임(제12조의 12)	• 청정수소 인증기준 고시로 규정(제25조의 3)	•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기준, 절차, 방법은 시행령 위임(제25조의3)
유사표시 금지	-	• 청정수소 거짓표시 시 과태료(1천만원)(§62)	• 청정수소거짓/ 유사표지 금지(제25조의2④) •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62)
이행여부 유통질서 확립	• RFS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제23조의 2)	• 청정수소 유통 확인을 위한 생산량 및 구매자 통보의무 • **청정수소 판매증명서 발급의무**(이상 제25조의 3)	• 청정수소 유통 확인을 위한 제조량, 구매자 통보의무(제25조의 2)
판매의무 (보급 촉진)	• 신재생 보급촉진 위해 석유정제업자 • 수출입업자에게 수송용연료에 신재생연료 혼합의무(RFS) 부과 가능 • 산업부는 의무이행확인 위해 자료제출요구 가능(제23조의 2)	• 청정수소 보급촉진 위해 충전소 등에 청정수소 판매 • 사용의무 부과 가능(제25조의 7) • 산업부는 의무이행 확인 위해 자료제출요구 가능. 특별한 사유 없을 시 응해야 함 • 실적보고 의무화(제23조의 7)	• <좌동> (제25조의 4))

구매의무 (RPS, CHPS)	• (의무자)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 (의무)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이용 • 공급 - 의무물량 합계는 **총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 의무자별로 의무물량 고시 - REC로 의무물량 충당가능 - 3년 이내에서 의무이행 연기 • 산업부는 의무이행확인 위해 자료제출요구 등 가능 • 의무이행 연기에 관한 사항시행령에 위임	• (의무자)**전기판매사업자** • (의무)일정량 이상 청정수소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 - 의무물량합계는 **연도별로 시행령**으로 정함 - 의무물량은 기본계획 등 고려 연도별로 정하여 고시. 위원회의 심의 필요 • 산업부는 의무이행확인 위해 자료제출요구 가능. 특별한 사유 없을 시 응해야 함 • CHPS 운영기관은 시행령에 따라 운영규칙 승인받아야함 (제12조의8)	• (의무자)**전기사업자 중 시행령**⇒판매, 발전사업자 등 가능 •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 구매 - 의무물량은 기본계획 등 고려 연도별 시행령으로 정함 - **이 경우 수소발전사업자와 구매의무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약체결** • <좌동> • <좌동> (제12조의5)
공무원 의제	• 공급인증, 설비인증, 품질인증, RPS업무관리 기관의 임직원은 형벌 적용시 공무원 의제(제33조)	• 청정수소제조시설 인증업무 수행 임직원은 형벌 적용시 공무원 의제(제57조)	• 청정수소인증기관 임직원은 형벌 적용시 공무원 의제(제57조)
과징금	• RPS, RFS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부족분의 1.5배 이내)** • RPS분→전력기금, RFS분→에특회계에 귀속(제12조의6, 제23조의3)	• 청정수소 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상한 미설정)** • 구매의무자분→전력기금, 판매의무자분→에특회계 귀속 • 미납시 가산금(제25조의 9)	• <좌동> • <좌동> • <좌동> • 징수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지원 가능(제25조의6)
벌칙	• 거짓 • 부정하게 공급인증서 발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발급한 자(3년/3천만원) (제34조)	• 2년/2천만원(제59조) - 거짓 • 부정 지정/ 지정받지 않고 인증/ 인증기준 위반한 인증기관 - 거짓 • 부정 인증/ 변경 미인증 - 판매증명서 발급위반	

< 수소의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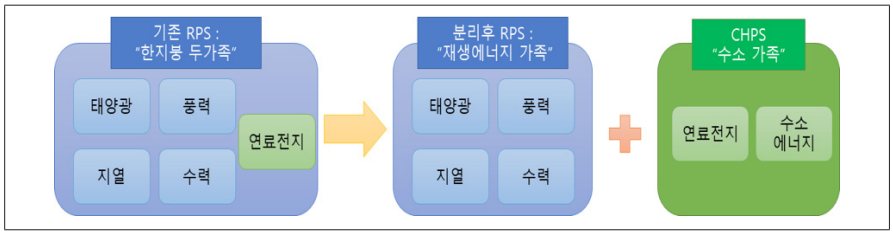
출처: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해외 동향(요약) >

구분	등 급	주요 내용
E U	**2단계**	· **그린**수소(재생에너지 활용), **저탄소** 수소(CO2 60%이상 감축) · 인증을 위한 생산시설 실증중
중 국	**3단계**	· **재생**수소(재생에너지 활용), **청정**수소, **저탄소**수소 ·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 및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제정('20.12월)
일 본	**4단계**	·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등급** 인증 · 어떤 생산기술이라도 일정 수준의 감축 시 최저 등급의 인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CHPS 도입 기본방향 >



< 현 행 >

신재생에너지법(RPS)	
태양광	0.7~1.5
풍력	1.0~2.0
바이오	0.5~2.0
기타(조력 등)	0.25~2.5
연료전지	2.0
의무대상자 : 발전사업자	

▶

< 향후 별도 분리시 >

재생에너지법(RPS)	
태양광	0.7~1.5
풍력	1.0~2.0
바이오	0.5~2.0
기타(조력 등)	0.25~2.5
의무대상자 : 발전사업자	

+

수소법(HPS, CHPS)	
연료전지 (부생·추출수소)	별도의 계약체결
연료전지 (청정수소)	
(미래) 수소터빈	
의무대상자 : 발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CHPS 도입에 따른 REC 발급·운영계획(산업부) >

RPS 설비등록 (시행 당시)	발전사업허가 (시행 당시)	공사계획인가 (시행 후 1년 이내)	지원방안
기등록	-	-	REC 계속 발급
미등록	획득	획득	REC 계속 발급 or CHPS 중 선택
	획득	미획득	CHPS로만 지원, REC 발급 금지
	미획득	-	

참고자료 1 수소분야 민간 투자 계획('30년까지 총 43조원 이상)

◇ 주요기업은 ①그린·블루수소 등 생산분야에 11조원, ②액화플랜트 등 저장·유통에 8조원, ③발전·수소차 등 활용분야에 23조원 투자 예정

◇ 중소·중견기업 등은 부품 및 전문분야 중심 1조원 투자 예정

< 주요 그룹별 투자 계획(안) >

그룹사	투자분야	총액
SK	· 대규모 액화플랜트 구축, 연료전지발전 확대 등	**18.5조원**
현대차	· 수소차 설비투자 및 R&D(분리막 등), 연관인프라(충전소 등) 투자	**11.1조원**
POSCO	· 부생수소 생산·해외 그린수소 도입,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	**10조원**
한화	· 그린수소(수전해) R&D·실증·생산, 수소혼소발전 등	**1.3조원**
효성	·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충전소 보급 등	**1.2조원**
중소·중견	· 가정용 연료전지, 그린수소 R&D, 수소추출기, 수소저장용기 등	**1.2조원**

<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안) >

	As-Is		To-Be	
생산	• 그레이 수소에서 청정수소(블루, 그린) 수소로 생산 패러다임 전환			
	그레이수소 (부생, 추출)	▶	그린수소(수전해) · 수전해 R&D 및 실증, 생산기지 구축	블루수소(CCUS) · CCUS 설비투자, CO2 운송선박 건조
저장 • 운송	• 고압기체수소에서 저압 • 고효율 액화 • 액상 등으로 다양화			
	고압기체	▶	액화수소 • 충전소	그린암모니아
활용	• 모빌리티 다양화, 연료전지보급 확산 • 수소혼소발전 등			
	승용차	▶	상용차	건설기계
	연료전지(RPS)		연료전지(HPS)	수소혼소발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제3회 수소경제위원회 제1호 안건)

참고자료 2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해외동향

EU GO(Guarantee of Origin scheme for premium hydrogen)

□ 저탄소/그린수소 인증제를 '14년부터 설계

• 일정 기준의 배출량 보다 60% 이하 절감한 수소를 프리미엄 수소(Premium H2)로 정의, 저탄소 수소 또는 그린수소로 인증(2단계)

• 기준 배출량 : 추출수소 CO2 발생량(10.92kgCO2eq/kgH2) 기준

등급 분류	정 의
저탄소수소 (Low-carbon Hydrogen)	· 화석연료기반의 추출수소의 경우 CCS 또는 CCU를 통하여 CO2 60% 이상 감축한 수소
그린수소 (Green Hydrogen)	· 부분 또는 전부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한 수소 · 저탄소 수소의 배출기준 이하 만족

중국 저탄소 → 청정 → 재생수소 등 3단계 인증

□ 그린수소에 대한 기준, 평가방법을 표준으로 제정('20.12월)

• 인증기준은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EU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 기준 배출량 : 석탄가스화 CO2 발생량(29.02kgCO2eq/kgH2) 기준

등급 분류	정 의
저탄소수소 (Low-carbon Hydrogen)	· 재생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14.5kgCO2-e/kgH2 이하 CO2 감축 · 기준배출량 대비 50% 감축 수준
청정수소 (Clean Hydrogen)	· 재생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4.9kgCO2-e/kgH2 이하 CO2 감축 · 저탄소 수소 CO2 배출량 대비 1/3감축 수준
재생수소 (Renewable Hydrogen)	· 재생에너지를 고려하고, 4.9kgCO2-e/kgH2 이하 CO2 감축 · 저탄소 수소 CO2 배출량 대비 1/3 감축 수준

일본 1~4등급으로 4단계 인증

•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 등급 인증

* 기존의 어떤 생산기술이라도 일정 수준 감축시 최저등급 부여

• 기준 배출량 : 공정개선 기준(39.21kgCO2eq/kgH2) 이하

등급 분류	정 의
★	· CO2 배출량 11.2~39.21kgCO2eq/kgH2
★★	· CO2 배출량 7.84~11.2kgCO2eq/kgH2
★★★	· CO2 배출량 4.48~7.84kgCO2eq/kgH2
★★★★	· CO2 배출량 1.12~4.48kgCO2eq/kgH2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 3 연료전지발전소 설립 추진위한 행정절차

추진 절차	주요 내용	비 고
발전사업허가	• 전기사업허가 : 3MW 초과(산업부), 3MW 이하(지자체)	발전사업주 → 산업부 • 지자체
▼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주 → 환경부 • 지자체
▼		
공사계획인가 • 승인	• 공사계획인가(발전) • 공사계획승인(집단에너지)	발전사업주→ 산업부 • 지자체
▼		
발전소 건설	•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후관리 등	사업자
▼		
가스안전검사	• 가스안전검사	발전사업주→ 가스안전공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발전사업주→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수급계약	발전사업주→ 전력거래소 • 한전
▼		
발전소 준공	• 준공검사	발전사업주 →지자체

※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후 신청하나, 사업별 상이.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040호



조 오 섭

선 거 구	광주 북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2.22	제안
상임위원회	2022.0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해당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 ·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신설 등).

참고자료

< 해체공사감리원 상주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나.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제3호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상

다.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로서 건축물이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명 이상

3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791호



이 규 민

선 거 구	경기 안성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28	제안
상임위원회	2022.0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전체가 불에 타고,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물류창고 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워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등) 등 마감재료의 특성 또한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참고자료

<건축물 구조에 따른 화재확산 방지 규정(방화규정)>

구 분		화재확산 방지 설치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건물 내부 방화구획 (내화구조 벽·바닥)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벽 (구획면적 1,000㎡미만)

<창고·공장에 대한 마감재료 기준 강화 추진내역>

구 분		종 전	개 선
적용대상		600㎡이상 창고, 1000㎡이상 공장	모든 규모 창고·공장
시험기준	샘플시험	완성품(강판 등을 붙인 단열재) 평가	각 단일재료(강판 등을 제거한 심재) 평가
	실대형 성능시험	(신 설)	실대형성능시험 추가실시
성능기준	복합자재	난연 이상 (강판 등을 붙인 재료가 난연)	준불연 이상 (강판 등을 제거한 재료가 준불연)
	기타	피난동선 및 건물 규모에 따른 화재위험도를 감안하여 차등적용 (내부) 방화구획 + 복도·통로 준불연 마감재료 (외부) 5층이하 난연 / 6층이상 준불연 마감재료	

<재료별 화재안전성능>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성 능	750℃에서 20분 대피시간 확보	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4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41호



이 용 호

선 거 구	전북 남원시임실군 순창군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9.14.	제안
상임위원회	2022.0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이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수수료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음.

그런데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호출비와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료서비스 및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9제2항).

참고자료

○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유상운송
○ **플랫폼중개사업**: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중개하는 중개 플랫폼만 제공

참고자료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 중개요금 현황(2022.1.31.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서비스명		플랫폼 이용료	취소수수료
중형	일반호출	없음	없음
	플러스(기업회원)1)	0원 ~ 22,000 원	1,000원
모범2)	즉시호출	0원 ~ 5,000원	2,000원
벤티	즉시호출	없음	없음
블랙	즉시호출	없음	
프리미엄 예약	예약호출	예약 호출 이용료 0원 ~ 50,000원 (플랫폼 이용료와는 별개의 부가서비스3) 이용료 별도 부과 가능)	

1) 플러스 : 기업회원 서비스, 배차 보장 서비스 (90% 배차 보장)
2) 모범 : 목적지 미표시 및 자동배차 시스템 기본 적용 (기사가 콜 선택 불가)
3) 기사 부가서비스 : 의전, 짐 들어주기, 꽃다발 장착, 공항 환영 피켓 에스코트 등과 같이 고객 요청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
4) 취소수수료 : 배차 완료

[추가설명]
- 운임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것으로, 중개요금에 포함되지 않음
- 상기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플러스는 현재 카카오T비즈니스(기업 고객) 이용자 대상으로만 운영 중임
- 향후 중개 서비스의 세부 명칭(예, 스마트호출, 플러스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벤티, 블랙의 각 즉시호출 및 예약에 대한 운임 및 취소 요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각 시 · 도지사에게 별도로 신고하고 있음

□ 코나투스(반반택시)

구분	내용	중개요금(1인)	취소수수료
일반호출	택시앱을 통해 중형택시 호출	무료	무료
반반호출	택시앱을 통한 자발적 동승 중개	22시 ~ 24시 2,000원 00시 ~ 04시 3,000원 04시 ~ 10시 2,000원	4,000원

(참고 1) 반반호출 취소수수료
- 승객의 노쇼, 매칭 후 취소, 경로변경, 만취상태로 탑승, 2인 이상이 함께 탑승시도, 본인 이외 탑승 시 취소 위약수수료 4,000원 발생 (반반호출 2인 중 원인제공 1인에게 부과)

(참고 2) 반반호출 관련 사업개요
ㅇ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아래의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추진
- 실증사업 명: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반반택시)
- 유효기간: 2019.8.1.~2021.7.31.(2021년 5월 현재 실증특례 연장신청 완료)
- 지정 범위

구분	범위
호출 가능지역	서울시 전역
호출 가능시간 및 플랫폼 요금	22시~24시 4,000원 (승객당 2,000원)
	00시~04시 6,000원 (승객당 3,000원)
	04시~10시 4,000원 (승객당(2,000원)

- 부가조건
① 승객의 안전성을 위한 담보체계 구축
△ 동성만 매칭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카드·체크카드결제 △탑승사실 지인알림 및 자리 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체계 운영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 가입 등
②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하여 서울시 협의
△ 노쇼(No-Show) △임의하차 △당초 목적지 변경 △승차예정위치 부재 등의 상황 발생 시 합리적 요금징수, 운송 서비스 제공방안 등

□ 진모빌리티(i.M.)

구분	내용	취소수수료
i.M (대형승합택시)	최소 0원 ~ 최대 3,000원[1)]	최소 0원 ~ 최대 2,000원[2)]

※ 서울에서는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경영중이며, 경기도 등에서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을 하고 위 내용으로 요금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출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음.

※ 런칭 초기, 프로모션 기간, 최적 범위시간대 도출기간 무료. 내용 변경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1) 호출요금 부과 조건 : 범위 시간대에 호출 수요가 공급 택시보다 많을 때 호출 요금 부과
- 범위 시간대를 1분으로 정했을 때, 1분 동안 공급 택시와 호출 수요를 분석하여 호출 요금 부과
- 최적(=승객과 운송사업자의 상호 이해가 가능한) 범위 시간대를 도출하기까지 호출 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범위 시간대 도출 진행

1) 측정 요소 : 공급 택시 1대 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천원, 5배 이상 2천원, 10배 이상 3천원

2) 호출취소 요금 부과 조건 : 무료 호출/1천원 호출시 0원, 2천원 호출시 1천원, 3천원 호출시 2천원

5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093호



윤 준 병

선 거 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3.	제안
상임위원회	2022.0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5년부터 시 · 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호의2 신설).

참고자료

<친환경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22,528,295 (100%)	23,202,555 (100%)	23,677,366 (100%)	24,365,979 (100%)	24,911,101 (100%)
하이브리드	313,856 (1.39%)	405,084 (1.75%)	506,047 (2.14%)	674,461 (2.77%)	908,240 (3.65%)
전기	25,108 (0.11%)	55,756 (0.24%)	89,918 (0.38%)	134,962 (0.55%)	231,443 (0.93%)
수소	170 (0.00%)	893 (0.00%)	5,083 (0.02%)	10,906 (0.04%)	19,404 (0.08%)

자료: 국토교통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국제 동향>

구 분	주요 동향
프랑스	(법제화) '40년 내연기관차(승용) 판매 금지 * 2019.12. 법제화
영국	(정부 발표) '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EU	(집행위원회 발표)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일본	(정부 발표) '35년까지 내연기관차(승용) 판매 금지 추진(하이브리드는 허용)
미국(캘리포니아)	(주지사 행정명령)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중국	(로드맵) '35년 일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추진(하이브리드차는 허용)

자료: 국토교통부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O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O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5월호는 2022.4.16.부터 2022.5.15.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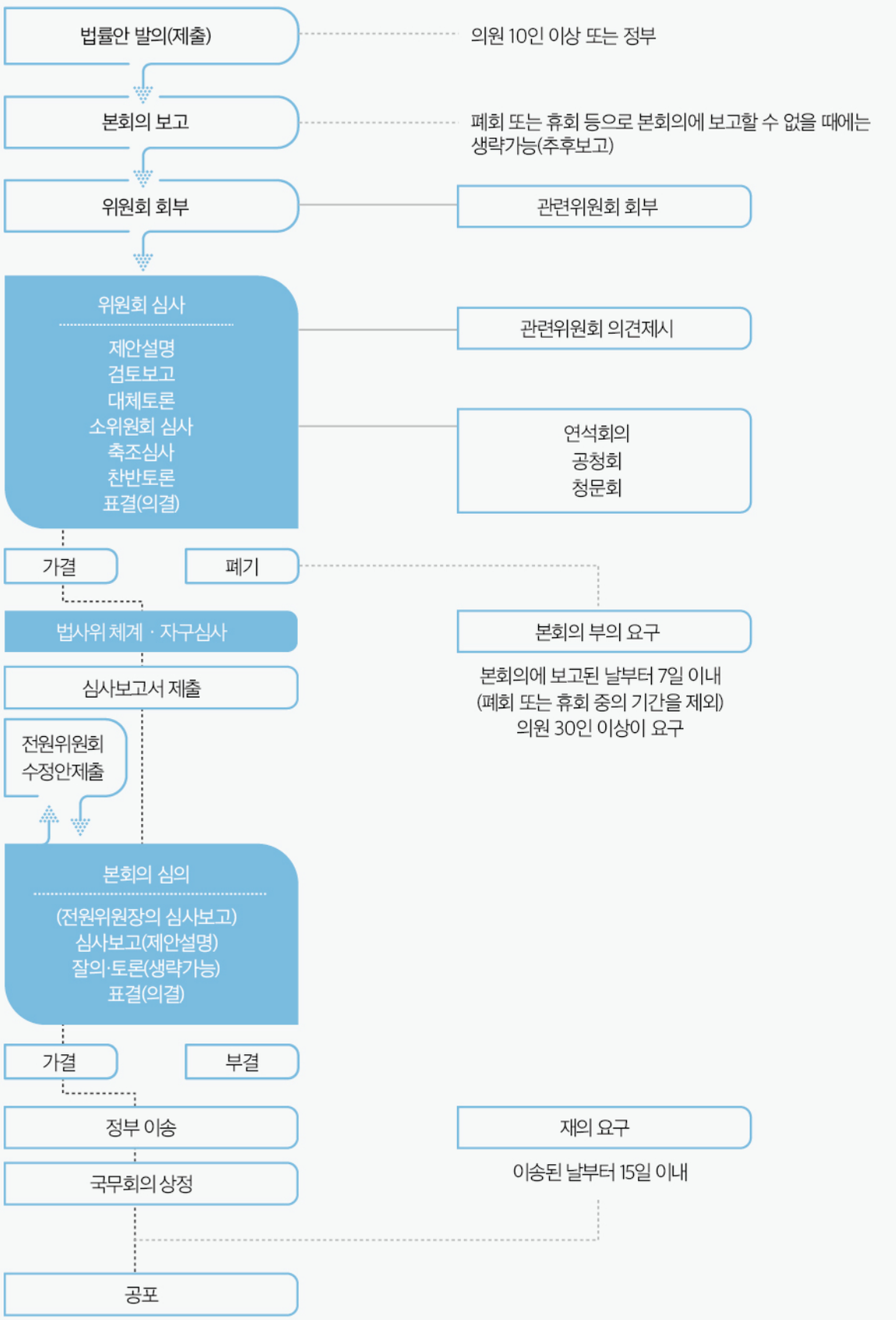
일자 / 위원회	15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5월 2일	3일	4일	6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 제395회 제1차											● 제396회 제1차	● 제397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	●			●	● ●	●				●		●		●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국방위원회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						
외교통일위원회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			●	●	
특별위원회	●			●		●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www.draju.com